

第28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議錄

第 6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28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제도 및 단수유예기간 설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단수로 인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빈곤가구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요금 체·미납 등으로 단수조치된 취약계층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수조치된 가구는 약 13만 가구로 동 기간 동안 4.2%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요금 체납 및 미납’으로 단수조치를 당한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는 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체납 및 미납 등으로 단수조치된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보편적 공급의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적인 단수 조치를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수

돗물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규정하고(안 제2조제6항 신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의 할인제도를 마련하며(안 제38조제3항 신설),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거절의 사유와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단수로 인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빈곤가구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9조제3항 신설).

아무쪼록 수돗물 공급에 있어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등 보호를 요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신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육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공공요금으로 지출되어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 준다면 그만큼의 예산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를 포함한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등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제안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중 자체적으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곳도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맡겨 둘 경우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 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교수도요금 감면의 의무화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갑 출신 이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수도법 제72조에서는 손괴자부담금¹⁾을 수도와 관련된 공사비용 발생의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1조에서는 주택단지, 산업시설 설치자 등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공사, 수도시설 유지, 손괴예방 유지비용 등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와 관련된 공사비용 발생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71조와 제72조는 같은 내용을 두 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증설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수선·유지 시에

는 손괴자부담금으로 구분만 하고 있어 운용하는 실익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사업 주체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수도법 제72조 “(손괴자부담금)”를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야 의원 1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관으로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심의위원회는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수도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정당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1) 손괴자부담금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도시설의 수리·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시설 설치비 등을 그 사업자나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

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강창일 의원입니다.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나 지하염수는 대체 수자원으로 그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담수의 이용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 먹는물을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으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 먹는샘물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해수(열지하수)는 바나듐, 셀레늄 등의 유용성분이 풍부함에도 먹는물로 제조·판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해수와 성분적 특성이 유사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먹는지하해수도 먹는물에 포함하고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하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산 먹는물 수입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는물의 범위에 먹는지하해수를 추가하고, 지하해수 및 먹는지하해수의 정의를 신설하며,

둘째, 먹는샘물 외에 먹는지하해수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입니다.

1. 건명 :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 의뢰의 건

2. 제·개정의 필요성

샘물과 먹는샘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명확히 함.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

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로 규정하고,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여, 샘물이나 먹는샘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샘물과 먹는샘물의 정의 규정에 동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샘물을 개발하거나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샘물 또는 먹는샘물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샘물과 먹는샘물의 정의에 수질 기준의 적합성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 기준을 정하여야 할 대상에 먹는물 외에 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을 추가함으로써 먹는물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

가. 샘물 및 먹는샘물의 정의에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나. 먹는물·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5. 개정 방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먹는해양심층수” 등의 예에 따라 샘물과 먹는샘물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장님 여러분!

김정권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

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벌규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정진섭 의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액비 생산 및 이용기술이 향상된 여건을 감안하여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액비제조 기술의 발달로 악취발생이 없는 양질의 액비가 생산되고 있으나 살포대상지가 한정되어 자원화에 한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액비 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까지 확대하여 액비이용을 활성화하고

둘째,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별도의 등록 없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등록으로 인한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 등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12년 해양배출금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여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처리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수역의 물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

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 준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먹는 물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4 다이옥산 문제처럼 허용치 이하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먹는물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법규상 사전규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오염원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존을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먹는 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이해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들은 3개 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각 공단별 보험료 징수로 과도한 인력이 징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제정 법률안의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이해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들은 3개 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각 공단별 보험료 징수로 과도한 인력이 징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통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제정 법률안의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이해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들은 3개 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각 공단별 보험료 징수로 과도한 인력이 징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제정 법률안의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이해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들은 3개 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각 공단별 보험료 징수로 과도한 인력이 징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위 제정법률안의 관련 부수 법안으로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로, 보험관계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각각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

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 기관마다 각각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 비용의 낭비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납부에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3개의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개의 공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뛰어난 징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세청의 세금 징수율보다도 높은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다른 별도의 징수기관을 설립해 통합하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절감될 것이고 통합에 따른 인력이동 규모도 작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국에 가장 많은 지사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 업무를 일원화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기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 기관마다 각각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 비용의 낭비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납부에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3개의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개의 공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뛰어난 징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세청의 세금 징수율보다도 높은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다른 별도의 징수기관을 설립해 통합하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절감될 것이고 통합에 따른 인력이동 규모도 작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국에 가장 많은 지사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 기관마다 각각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 비용의 낭비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납부에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3개의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개의 공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뛰어난 징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세청의 세금 징수율보다도 높은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다른 별도의 징수기관을 설립해 통합하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절감될 것이고 통합에 따른 인력이동 규모도 작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국에 가장 많은 지사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 기관마다 각각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 비용의 낭비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납부에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3개의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개의 공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뛰어난 징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세청의 세금 징수율보다도 높은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다른 별도의 징수기관을 설립해 통합하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절감될 것이고 통합에 따

른 인력이동 규모도 작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국에 가장 많은 지사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 방식은 매년 자진신고납부에서 월별 부과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정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공단에 기금의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종합적인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산재의료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최대 1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재지정 제한 제도를 두며,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신체에 장애가 고정되기 이전에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통해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동 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업무를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하

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의 기능중복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기능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 법안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처리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기업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보험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 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어 구직자는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계에 필요한 최저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원리에 어긋나며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

어 실직자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경기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실업자의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라 현행 3~8개월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4~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고용보험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제출한 본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검토하시어,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근래의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대응하여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실업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고려하여 카지노, 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 수익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존의 휴업, 직업훈련 외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를 고려하여 기존의 보험료 외에 카지노,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 수익금의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갑 출신 이성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으며, 직종이 고령자의 능력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 고령자들이 적합한 직종에 종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 실정을 반영하여 재정환 ‘고령자고용정보센터’(현행법 제10조제1항에 근거)는 고령자에 대한 구직·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고, 고령자의 능력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의 고용형태 개선의 문제점이 오랜 시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직업적성검사 등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령자에 대한 인적자원조사 및 데이터 축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고령자고용정보센터’(제10조제1항)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하고, 동 센터의 업무에 고령자의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고령근로자 및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의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보장 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조기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자들을 위한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직예정자들에 대한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 및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자들을 위한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직예정자들에 대한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1조의3 신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약 716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는 생산인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고령사회의 도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실직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침체로 이어져 가정불화 및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

실합니다.

아무쪼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